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의 제한 등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2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의 제한	3
2. 체육시설 내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체육 강습 금지	7
※ 참고자료	11
1.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협회 의견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6. 1. 22.
3. 회 부 일: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의 제한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휴업·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임(안 제20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u>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u> 1. <u>제29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2. <u>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u> 3. <u>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u>

	<u>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u> <u>아니한 경우</u>
--	--

다. 검토사항

현행법령¹⁾은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가 그 기간 내에 휴업·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원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 7. (생략)

② (생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④·⑤ (생략)

있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 휴업·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직권으로 휴업·폐업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폐업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전부 또는 중요 시설을 이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휴업·폐업 사실의 사전 통보 등 의무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이후 동일 명의로 재등록·신고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안 제20조의3제1호의 경우 직권 휴업·폐업의 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제한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³⁾, ②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권 제한으로 기간을 축소하거나 휴업·폐업 사유에 따른 차등적 등록 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4)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의견은 [참고자료 1] 참조

2. 체육시설 내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체육 강습 금지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23조 및 제4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u>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u>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① ---- ----- ----- <u>「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이하 “체육지도자”라 한다)를-----.</u>
<u><신 설></u>	<u>②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생략)</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 <u>300만원</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u>	3. <u>제23조제1항에</u> ----- ----- -----

<신 설> 4. ~ 7. (생 략) ② (생 략)	3의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 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규모에 따라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⁵⁾,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⁶⁾.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그런데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등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 내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체육 강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체육시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 체육 강습의 전문성 제고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체육지도자 아닌 사람의 체육 강습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⁷⁾에 비추어볼 때, 체육지도자는 운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응급처치 요령을 갖추고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체육 강습이 주된 배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 확인(2022헌마316)

입법자는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운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응급처치 요령을 갖춘 체육지도자가 체력단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하여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도서산간 지역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의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에 따라 체육지도자만 체육 강습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증가, 음성 강습 양산 등이 우려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협회의 의견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및 체납자 양산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⁹⁾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7

8)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의견은 [참고자료 1] 참조

9)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의견은 [참고자료 1] 참조

※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협회 의견

1) 개정안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명 /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고양시 (‘26.2.5.)	• 개정안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반대 - 직권폐업 후 1년간 체육시설업 등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권 제한이고,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와 관련하여 동일시설 범위 판단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어려움
대구광역시 (‘26.2.5.)	• 개정안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관련 - 체육시설업 휴·폐업 관련 사실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현행 체육시설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사전 통보 대상을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개정안 제20조의3 제2호에 지자체의 장 포함 필요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26.2.)	• 개정안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찬성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26.2.)	•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관련 -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고, 휴·폐업 후 1년간 제한 등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과도하며 휴·폐업 사유에 따른 차등적 등록 제한 기간 설정 필요
(사)한국대중골 프장협회 (‘26.2.)	• 개정안 제20조의3(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제한) 관련 - 체육시설 등록 또는 신고 제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제1, 2, 3호 각각 ‘3월’로 수정 제안

2) 개정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제40조(과태료) 관련

지방자치단체명 /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26.2.5.)	• 개정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반대 -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부족 고려, 민간자격 보유자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로 강습 주체 확대 필요
고양시 (‘26.2.5.)	• 개정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반대 - 소규모 체육시설 구인난, 이용료 상승 및 음성 강습 증가, 경쟁 업체 간 보복성 민원 심화, 동호회 활동과 강습 간 구분기준 불명확에 따른 현장 마찰 등 우려 • 개정안 제40조(과태료) 반대 - 과태료 상한액 인상은 영세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체납자 양산 및 경쟁 업체 간 보복성 민원 심화 등 우려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26.2.)	• 개정안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반대 - 스키장 강습 수요 대비 인력부족 문제, 이용료(강습비) 인상 및 음성 강습 증가 가능성 등 우려